

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IBK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 1호[주식]

2. 주요 변경사항

- ① 투자위험등급 변경 (2등급 → 1등급)
 -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) 업데이트(47.73% → 50.85%)
- ②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 내용 삭제에 따른 기재정정

3. 시행일: 2025년 4월 30일

4. 변경대비표

항 목	정정요구 ·명령 관련여부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표지 및 [요약정보] 상단	아니오	위험등급 변경	IBK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(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)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IBK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(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)을 감안하여 <u>1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아니오	-	-	연혁추가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아니오	위험등급 변경	라.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(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)을 고려하여 6등급 중 2등급(높은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(이하 생략) ▪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: 47.73% <투자위험등급 변경내역> - <신설>	라.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(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)을 고려하여 6등급 중 <u>1등급(매우높은위험)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(현행과 같음) ▪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: <u>50.85%</u> <투자위험등급 변경내역> - 2025.04.30: 2등급 → 1등급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	아니오	2025.01.01 외국원천	(1)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	(1)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

<p>사항</p>		<p>징수세액 환급 내용 삭제에 따른 기재정정</p>	<p>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이자·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습니다. <변경 전 -그림 1>(삭제)</p> <p>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</p>	<p>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이자·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p> <p><u>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인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펀드소득 지급 시,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(이자·배당소득)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(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)</u></p> <p>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</p>
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3. 펀드명 : IBK 골드마이닝 증권 자투자신탁 1호[주식]

4. 주요 변경사항

- ① 투자위험등급 변경 (2등급 → 1등급)
 -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) 업데이트(47.73% → 50.85%)
- ②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 내용 삭제에 따른 기재정정

3. 시행일: 2025년 4월 30일

4. 변경대비표

항 목	정정요구 ·명령 관련여부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[요약정보] 상단	아니오	위험등급 변경	IBK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(일간 최대손실예상액)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IBK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(일간 최대손실예상액)을 감안하여 <u>1등급</u>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